

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9조(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설정)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·경제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을 정한다. ②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, 신성장·일자리지원 프로그램,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.	제9조(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설정)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·경제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을 정한다. ②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, 신성장·일자리지원 프로그램,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, <u>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</u>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.	- 프로그램 신설
<u><신 설></u>	<u>부 칙 <2026. 7. 23.></u> <u>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	- 부칙 신설 - 시행일자 명시